

베트남 원산지 관리 ‘사후’에서 ‘사전’ 관리로 패러다임 바뀐다

베트남 현지 관세사·변호사 조언, 원산지 관리 실무
대응방안과 위반 시 기업리스크 (11p)

[초점]

미·중 → ASEAN·EU로 다변화된 수출시장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 전망 (4p)

[위클리 뉴스]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국내 최초 덤핑방지관세 재심, ‘중국산 PET 필름’
최대 36.98%로 요율 변경
EU, 합금철 세이프가드 시행 “3년간 TRQ 축소” (7p)

[관세행정안내]

비 BWT 거래 시 한·EU FTA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19p)

[관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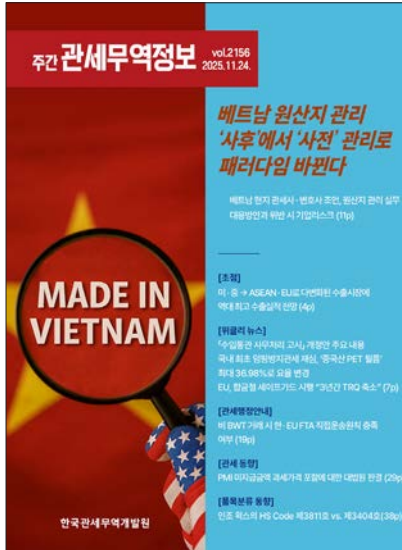
PMI 미지급금액 과세가격 포함에 대한 대법원 판결 (29p)

[품목분류 동향]

인조 왁스의 HS Code 제3811호 vs. 제3404호 (38p)



MADE IN
VIETNAM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11월 24일(통권 제2156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올해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할 전망, '미·중 → ASEAN·EU'로 수출시장 다변화 영향

07 Weekly News

오피니언

- 11** 시선, 베트남 통관
이여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백웅렬 법무법인(유) 광장 베트남
법인장(변호사)

관세행정실무해설

- 19** 관세행정안내
비당사국에서 BWT 거래 시 한·EU FTA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26 질의응답사례
지압슬리퍼의 HS Code

판례동향

- 29** 관세판례해설
특수관계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해설

품목분류동향

- 38** 세번 바로잡기
인조 왁스

최신개정법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www.kctd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할 전망, '미·중 → ASEAN·EU'로 수출 시장 다변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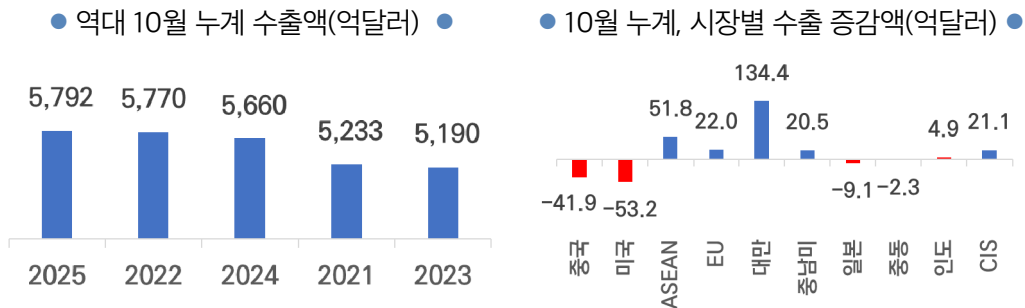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정부’, 글로벌사우스로 시장 확대 위해 본격 세일즈외교 시작

올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주의 확산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정부도 수출시장 확대 및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국가와 경제·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행보를 보이며,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 관세영향 및 수출시장 다변화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관세 등 통상환경 급변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요인과 수출시장 다변화 효과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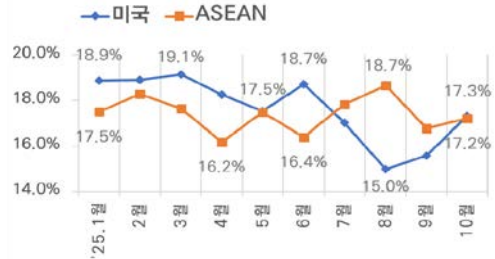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지역별 수출액은 ASEAN(51억 8,000만달러), 유럽연합(EU, 21억 2,000만달러), 대만(135억 3,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시장 다변화 노력이 효과를 거두며 관세와 미·중 갈등 영향을 받은 대미국 수출과 대중국 수출을 넘어섰다.



(자료 : KOTRA)

최근 대미 수출시장 집중도 지수도 하락해 실제 수출시장 다변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수출시장 집중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집중도 지수는 896에서 791로 점차 완화되며 시장 다변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미 수출 비중은 올해 1월 18.9%에서 10월 들어 17.2%로 낮아지고 그 자리를 ASEAN과 대만 등 글로벌사우스 대체 시장이 차지했다.

- 2024.1~2025.9, 월별 수출시장 집중도 지수 ●
- 2025.1~10, 미·ASEAN 수출 비중 추이(%) ●



(자료 :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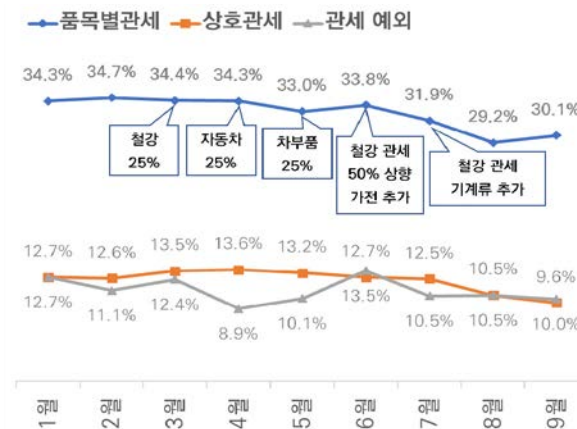
품목별로도 미국의 고관세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들이 관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빠르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철강 포함 미 품목별 관세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34%였던 대미 수출 비중이 9월에는 30%까지 낮아졌다. 자동차의 경우 EU·독립국가연합(CIS) 시장으로 다변화되고, 품목도 전기차, 중고차 등으로 다변화하며 대미 수출이 14.1% 줄었음에도 총수출은 오히려 2.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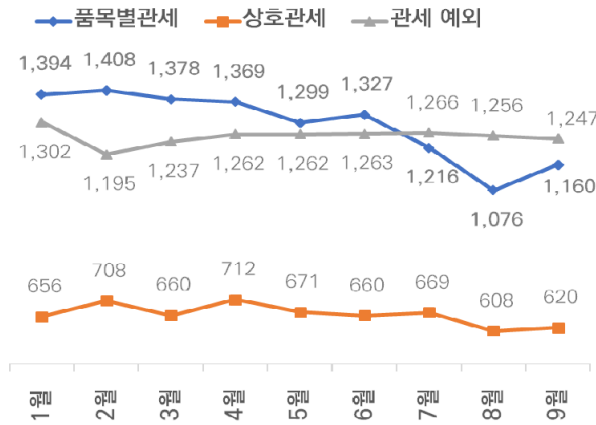
특히 K-소비재의 대표 주자인 화장품의 경우 K-컬처와 산업이 선순환 작용을 보이며 총수출 증가와 시장 다변화 성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지난 8월 화장품 용기류의 알루미늄 함량에 대해 품목별 관세가 적용됐음에도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액도 1~9월 누계 18.1% 증가한 17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시장 다변화 지수까지 개선됐다.

이외에도 미국의 고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수출도 미국 등 세계 수요 증가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덕분에 수출 실적 향상, 수출시장 다변화 모두에서 성과를 거뒀다.

- 관세 영향 품목별 대미 수출 비중(%) ●



● 관세 영향 품목별 수출시장 집중도 지수 ●



(자료 : KOTRA)

보고서는 수출구조 다변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면에서는 ASEAN·인도·중남미·아프리카가 포함된 글로벌사우스로 시장을 확대하고, 품목면에서는 5대 K-소비재(뷰티, 식품, 의료, 패션, 생활용품) 및 ABCDE(AI,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중심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확대를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 세일즈외교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로 다변화하고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이번 순방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IMF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9년 글로벌사우스 국가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6.3%로 선진국으로 지칭되는 글로벌노스의 3.9%에 비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측면에서도 세계 81억명 중 67%인 54억명이 글로벌사우스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에 있으며, 특히 0~14세 비중이 28.6%로 선진국의 16%에 비해 커 향후 높은 경제 역동성과 구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UAE 방문을 통해 1,000억달러(한화 약 146조원) 규모의 경제 협력 성과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100년 동행’의 경제 동맹으로 격상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협력 강화, 방산 수출 확대, AI·원자력발전소·에너지·문화 협력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K-City’ 조성을 합의하는 등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11월 19일 이집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111분간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 하구현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류생략 확대, 통관지세관 제한 완화”

관세청은 11월 20일 수입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속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되는 물품 중 ‘단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에 따라 해외에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반품 물량이 대량·일괄 집하, 재반입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또는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서류 매수와 관계없이 전자제출이 허용돼 행정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2,000톤 미만 해체용 선박도 대형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이전에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000톤 미만의 소형 해체용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 완료 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 재활용 업체는 수입신고 수리까지 고철 보관료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특정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물품의 경우에도 앞으로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통관지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이 발생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올해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고시 개정과 함께 11월 20일부로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하는 경우 세관 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전자통관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ㅣ 김성은 기자 ㅣ

‘중국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 재심으로 최고 3.84%→36.98%로 요율 변경

중국산 PET 필름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가 3.84%에서 36.98%로 요율이 변경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1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 등 2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재심

사 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의 사례다.

재심사를 통해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율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로써 재심사대상 공급자 2개사는 현행 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현재 각각 2.2%와 3.84%에서 7.31%와 36.98%로 변경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같은 날 무역위는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및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공청회’도 개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지난 9월 4일 종료함에 따른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25일 예비공정 판정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 행정예고 중이며, 오는 11월 26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하구현 기자 |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정부는 11월 18일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 의미가 크다”며, “이번 MOU 체결은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인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인력 양성 및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바라카원전 협력 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조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차단 위해 특별 단속 시행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조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법적인 자금 유통과 은닉을 국경 단계에서 단속해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조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 행위다. 우선 불법송금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해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더불어 환전 영업자, 소액 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공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 증가에 따라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동시에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을 병행한다.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Trade Based Money Laundering)이나 해외 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으며,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과 은닉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 글로벌 무역장벽에 공세적 통상정책 추진

내년부터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가 나오고 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도 연 2회 개최된다.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에서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불리한 조치 및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 '무역장벽

통합 DB' 구축 방안도 검토하는 등 주요 내용을 DB화해 기업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 매년 약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관 합동 무역장벽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되며, 양자회담, FTA공동위원회 등 논의 사항은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한다. 산업부는 연내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 하구현 기자 |

EU, 합금철 수입 급증하자 세이프가드 시행 "3년간 무관세 쿼터 축소"

EU가 역내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철강 산업에 필수인 합금철에 대해 유형별로 수입 쿼터제(TRQ, Tariff Rate Quotas)를 적용하고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과거 3년 대비 25% 축소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EU 가격에 따른 변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월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합금철(Ferroalloys)은 철(Ferro)과 다른 원소들을 결합시켜 만든 합금으로 철강의 성능, 성질,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필수 원자재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합금철에 대한 세이프가드 검토를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글로벌 과잉생산, 타 국가의 수입 제한, 전반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해 EU로 유입되는 특정 합금철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EU 기반 합금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11월 17일 발효됐으며 향후 3년간 시행된다.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철강업계는 "건설·국방·자동차와 풍력 등 녹색에너지 산업용 고급 철강 생산을 위해 역내 합금철 공급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EU는 지난 10월에도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량을 1,830만톤으로 제한(2024년 대비 47% 감축)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상향(기존 25%에서 두 배 인상),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용해·주조(Melt and Pour)' 원산지 규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신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의 올해 10월 철강 수출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받았던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7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0월 한국의 철강 수출량은 218만 9,49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6만 8,922t)과 비교해 11.3% 감소했다. 2021년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베트남 통관

8월 11일 또 럽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민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관세·통관 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KOTRA 무역관, 이여람 관세사에게 베트남의 강화된 원산지 관리 규정에 관한 실무적 조언을 들었다.

상호관세 시대, 베트남산 수출의 새로운 리스크

- 원산지 관리와 실무 대응방안 -



이 여 랴 |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1.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왜 지금 MoIT로 모였나



출처 : 주간 관세무역정보(Chat GPT 생성 이미지)

2025년 5월부터 베트남정부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 권한을 산업무역부(MoIT)로 일원화했다. 이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강화[특히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transshipment) 시 최대 4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로 인해, 불법 환적과 원산지 위·변조 단속이 전례 없이 강화되는 가운데 추진된 조치다. **그간 상공회의소(VCCI) 등 기관이 발급을 담당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발급 절차의 일관성과 검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강화형 개편’으로 평가된다.**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업자 등록번호 등록 권한 철회 결정¹⁾ ●

시행 일정	권한 철회 대상
2025.5.5.부터 VCCI의 C/O 발급 및 REX 등록 업무 종료	• 일반 원산지증명서(C/O Form A, B) • 비가공증명서(CNM,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 GSTP(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노르웨이, 스위스 일반특혜제도에 따른 수출업자 REX 코드 등록

이와 더불어 MoIT는 각급 부서에 대해 FTA 및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검증 관리 강화를 지시²⁾했다.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도 원산지 위조 및 서류 불일치에 대한 검증 절차를 한층 엄격히 적용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특히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식화된 조치³⁾로, 베트남정부가 상호관세 시대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2. 원산지 관리 강화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의 일원화와 검증 강화는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검증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발급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공급망 내 원재료 출처 관리가 미흡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산 원재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제조기업은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공정 흐름도, 구매·수입 증빙자료 등 세부 서류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기업의 내부 원산지관리시스템(OAS, Origin Administration System) 구축 및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 확보가 필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상호관세 시대에는 ‘정확한 서류’가 곧 기업의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1) 결정 번호 1103/QD-BCT(2025.4.21.)

2) 지시문 제09/CT-BCT호(2025.4.15.)

3) 공문 번호 38/VPTT-TH(2025.4.10.)

3. 관세사·원산지 관리사 관점에서 본 실무 대응 전략

원산지 관리 강화는 행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며 직접 현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이 원산지 관리 강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필수 전략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원산지 판정 기준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

무엇보다도 정확한 이해가 가장 강력한 방이다. 수출기업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FTA 원산지 기준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동일하게 오해하는 사례가 많다. FTA 기준으로 판정한 원산지를 그대로 미국 수출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기업은 FTA 기준과는 별도로, CBP가 적용하는 독자적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별도의 판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CBP의 원산지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다. 이는 단순한 포장, 조립, 혼합 수준이 아니라, ‘상품의 이름·성질·용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수준의 가공이 이뤄졌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FTA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기준 등)과 달리, CBP는 물품별로 명확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세관의 재량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Case by Case로 판정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생산 공정이라도 세관의 판단에 따라 원산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결국 기업은 해당 가공 수준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판례법 체계(Common Law)를 따르기 때문에, **기존 CBP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이를 통해 유사 공정에 대한 세관의 판단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정별 생산기록, 원재료 투입내역, 가공공정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 체계는 CBP의 사전심사나 사후 검증 시 원산지 인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

2) 원산지관리체계(OAS) 구축과 공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원산지 검증 강화 국면에서 기업의 대응력은 데이터 관리 수준에 달려 있다. 특히 CBP나 베트남 MoIT의 검증이 ‘서류 중심’에서 ‘실제 생산 이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단순히 C/O 발급 서류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은 BOM, 공정흐름도, 원재료 투입내역, 생산·검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제품의 원산지 판정 근거를 즉시 추적·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원산지관리시스템(OAS)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OAS는 ERP(전사적 자원관리)나 MES(제조실행 시스템)와 연동해 부품·공정별 원산지 데이터의 자동 수집 및 저장, 변경 이력의 실시간 업데이트, 협력업체 원산지 증빙 관리, 내부 검증 로그 기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은 SAP 기반 ERP 내에 OAS 모듈을 통합해, 원재료 단위까지 원산지 변동을 자동 추적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엑셀 기반 DB에 간소화된 클라우드 관리시스템(예 : 구글시트·Notion 연동형)을 활용해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유무'보다 정기적인 점검과 내부 검증 루틴이다. 예컨대, **분기별 원산지 정합성 점검(Internal Origin Audit)을 통해 BOM 변경, 원재료 국적 변경, 협력업체 서류 불일치 등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OAS 기반의 사전 관리체계는 단순히 행정 편의에 그치지 않고, 향후 CBP·MoIT의 사후검증 대응력 강화, C/O 발급의 신뢰성 제고, 고의·과실에 따른 행정제재 리스크 완화로 직접 연결된다.

3)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대한 원산지 검증 강화

원산지 관리의 신뢰도는 협력업체 관리 수준에 달려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강화로 CBP는 수출기업 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Supply Chain Level)를 검증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완제품뿐 아니라 중간재·부품 단계의 원산지 위·변조 여부까지 확인하는 추세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상당수는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중간품·원재료를 공급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중국산 원재료를 베트남산으로 표시할 경우, 수출기업의 원산지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는 수준을 넘어, 협력업체에 대한 사전 실사 및 정기 검증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이때 핵심 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산지 정보의 정기 갱신 및 서류 보관 의무화
- ② 주요 원재료의 수입국·HS Code 일치 여부 확인
- ③ 리스크 국가(중국 등) 원재료 사용 여부 점검
- ④ 필요시 제3자(관세사·검증기관) 검증 수행

또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계약 시에는 '원산지 관리 의무조항'을 명시해, 자료 제출 및 위반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결국, 협력업체 검증 강화는 단순 리스크 대응을 넘어 상호관세 시대의 필수적인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4) 전문인력 양성과 외부 자문 네트워크 구축

원산지 관리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단순한 서류 작성 수준을 넘어, FTA 규정·품목분류(HS)·원산지 결정기준·CBP 판례 분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생산, 구매, 물류, 품질 등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전사적 차원의 원산지 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법령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실무 해석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법무법인·상공회의소 등 외부 자문 네트워크를 상시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미국 상호관세 대응이나 원산지 검증 이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내부 역량과 외부 자문으로 원산지 관리 전문성이 상호보완적으로 구축될 때, 기업은 예기치 못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무역 준수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4.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로, 원산지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베트남에 진출한 다수의 한국계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원산지 관리를 '사후 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수출 직전에 C/O를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정리하고, 협력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호관세 시대에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국 CBP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언제든지 사후검증(Post Audit)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서류 중심의 관리 체계만 갖춘 기업은 증빙 불충분으로 원산지 불인정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크다. 미국정부는 특히 환적 및 원산지 사기와 관련해 무역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부재해 기업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원산지 관리의 초점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관리'로 이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업은 공정별 생산 기록, 원재료 투입 내역, 가공 단계별 변형 수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납품업체의 원산지 정보 역시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일부 선도기업들은 이미 원자재 구매 단계부터 원산지 진단 절차를 내재화해, 부품 선정 시 원산지 판정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결국 원산지 관리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 리스크 관리'다. 단기적으로는 번거로워 보이더라도, 공정별 데이터 기록과 협력업체 검증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원산지 불인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베트남처럼 공급망이 복잡한 생산거점에서는 서류 위조나 불완전한 자료 제출로 인한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관리 수준이 곧 통상 경쟁력이다.**

관세사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원산지 관리의 더 이상 통관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 리스크 관리'의 일부라는 점이다.

시선, 베트남 통관

8월 11일 또 럽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민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관세·통관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백웅렬 변호사에게 미국의 관세정책에 관한 베트남의 대응 동향에 대해 들어봤다.

베트남, 원산지 위반 시 처벌 어떻게 되나

- 원산지 규정 위반 유형별 기업 리스크 -



백웅렬 | 법무법인(유) 광장 베트남 법인장(변호사)

베트남정부는 2025년 7월 2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반 수출품은 20%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되, 베트남을 경유한 환적물품에 대해서는 40%의 환적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위 합의에 따라, 베트남은 자국 내 원산지 관리 규정을 재정비하고, 실무 현장에서 원산지 규정 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내 원산지 관리 규정에 따른 위반 유형별 기업 리스크를 안내하겠다.

1. 원산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벌 책임 발생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제재는 관세 행정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벌로 베트남 정부 시행령(Decree 128/2020/ND-CP)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은 상호관세 합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최근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로 실무적인 적발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일정 금액의 과태료 부과와 물품 몰수, 폐기명령 등의 병과조치가 가능하다. 각 위반 유형별 행정벌 책임을 다음 표로 정리해봤다.

위반 유형	관련 조문	주요 내용	행정 과태료	병과 조치
원산지 허위신고	제8~9조	신고 내용이 실제 생산지와 불일치	100만~1억 VND 과태료	물품 몰수 가능
환급·면세 오신고	제8조 제3항	특혜관세 오남용	과소신고세액의 10~20% 과태료	세금 추징
위조 원산지증명서 (C/O) 사용	제11조 7항(a)	위조된 C/O 제출 또는 부정사용	4,000만~8,000만 VND 과태료	압수·폐기 세금 추징
허위 라벨·미표시	제22조	제품 라벨의 허위·누락 표시	100만~6,000만 VND 과태료	재수출·폐기명령
'Made in Vietnam' 허위표시	제17조	수입·환적품을 베트남산으로 허위표시	1,000만~1억 VND 과태료	물품 몰수, 불법이익 환수

이와 같은 행정벌 부과는 단순 허위신고나 서류의 오기 등이 발생한 초기 위반 단계에서 주로 적용되며, 만일 관련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고의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형법상 위조상품 제조, 거래 또는 공문서 위조죄로 적극적으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도 있다.

2. 원산지 규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 발생

위반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원산지 규정 위반은 형사적 책임도 야기할 수 있다. 베트남 형법은 원산지 위조 등을 국가경제범죄로 의율해, 직접 그 위반행위를 실행한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이 속한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에 강화된 원산지 관리 감독 경향을 고려하면, 유관부서가 반복적인 원산지 규정 위반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죄명	형법 조항	위반자 개인의 형사책임	소속 법인의 형사책임	주요 구성 요건
위조상품 제조·거래	제192조	1~15년 징역 또는 1억~10억VND 벌금	20억~1,800억VND 벌금, 영업정지 가능	반복·조직범죄, 불법이익 5,000만 VND 이상
위조 식품·첨가물 제조·거래	제193조	2~20년 징역(중대 시 무기징역 가능)	20억~180억VND 벌금, 영업정지 6개월~3년	인체 위해, 불법이익 50만VND 이상
위조 의약품 제조·거래	제194조	2~20년 징역 또는 사형	10억~200억VND 벌금, 영업정지 가능	사망 2인 이상 또는 대규모 이익
위조 비료·농약 등 제조·거래	제195조	1~20년 징역	10억~150억VND 벌금, 영업정지 6개월~3년	재산피해 30억 VND 이상
탈세(세금포탈)	제200조	3개월~7년 징역, 1억~45억VND 벌금	3억~1,000억VND 벌금	허위신고, 반복·조직법

죄명	형법 조항	위반자 개인의 형사책임	소속 법인의 형사책임	주요 구성 요건
공문서·인감 위조 (C/O 포함)	제341조	6개월~7년 징역, 3,000만~1억VND 벌금	없음	C/O·세관서류 위조, 불법이익 1,000만 VND 이상

실무적으로 법인의 양벌 책임까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기소 이후까지 장기간 베트남 법인의 법적 대표자를 포함한 주요 관여 인원에게 대한 출국금지 등 제한 조치까지 부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베트남 진출 기업의 대응

이와 같은 원산지 위반 처벌 규정과 관련해, 베트남 내에서 제조·수출 행위를 영위하는 진출 기업이 고의성을 갖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지만, 관리 부실에 따른 규정 위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 기록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라벨, 세관신고, 납세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특히 관리 감독의 미비로 원산지 규정 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방지해, 의도치 않게 고의적·조직적 위반 행위로 판단돼 회사의 형사적 책임이 유발되지 않도록, 원산지 내부 규정 정비와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불측의 책임 부담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비당사국에서 BWT 거래 시 한·EU FTA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덴마크에서 수출한 물품을 일본(비당사국)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그중 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한·EU FTA의 직접운송 관련 단일 탁송화물 규정에 따르면,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뤄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접운송원칙

1) 개요

FTA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물품에 관세인하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무상 FTA를 적용하려면 각 협정에서 정한 ① 거래당사자 요건, ② 품목 요건, ③ 원산지 상품 요건, ④ 절차 요건, ⑤ 운송 요건(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중 직접운송원칙은 FTA를 적용하기 위해 국제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운송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할 규정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설령 원산지 상품이 수입된다고 해도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2)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의 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 당사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협정 당사국 간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도 목적상 필요해 보이는 직접운송원칙은 그 예외가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칙대로 엄격하게만 운송 요건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를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물품들은 모두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물류실무상 환적이나 경유가 많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화물에 대한 FTA 적용을 무조건 배제한다면 FTA 활용도가 급감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① 경유·환적국 내에서의 작업범 위 안에서, ② 세관의 통제하에 경유·환적이 이뤄지고, ③ 기타 다른 추가 충족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봐 FTA를 적용하고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해당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지에 따라 미주형, 유럽형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미주형은 ‘직접운송 될 것’을 규정하지 않고 통과나 환적을 하는 경우 비당사국에서 추가 공정(가공)을 수행하거나 해당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에 있지 않다면 FTA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간접적으로 직접운송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유럽형은 ‘직접운송 될 것’을 명시한 협정을 말한다. 그 대신 일정 조건에서 직접운송에 대한 예외를 뒤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해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겠다(봐주겠다)”라는 예외를 마련한 것이다.

3) 한·EU FTA 직접운송 규정

한·EU FTA는 협정문에서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유럽형 FTA이며, 관련 내용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 목적상 직접운송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당사국의 정의, 의정서에서의 ‘탁송화물(Consignment)’에 대한 규정 및 직접운송(제13조)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일단 당사국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직접운송 규정에서의 원칙을 적용할지, 예외를 적용할지로 나눌 수 있다.

한·EU FTA의 경우 여느 협정과 다르게 유럽연합(EU) 자체가 당사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협정이다. 한·EU FTA 제1장(목적 및 일반정의)에서 이 협정상 양 당사자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의 조약(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 및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EU나 그 회원국 또는 EU 및 그 회원국(‘EU 당사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ASEAN FTA 등과는 달리 한·EU FTA는 EU 내에서의 국가 간 이동은 직접운송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수출자(SHIPPER ON Invoice&B/L) : 프랑스(원산지 인증수출자), ② 제조국 : HUNGARY, ③ 선적항 : KOPER, SLOVENIA’인 상황에서 모든 서류상 수출자는 프랑스이지만 선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에도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관세청

에서는 EU 역내에 있는 한, EU 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또 EU 역내 국가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 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해,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해 다뤄지는 제품을 말한다. 탁송화물에 대한 개념이 직접운송 규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해당 규정에서 직접운송의 예외를 적용할 때 단일 탁송화물(one single consignment)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의정서 제13조의 직접운송 규정에서는 한·EU FTA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원칙)하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예외). 다만, 직접운송의 예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운송의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②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③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FTA 협정관세 대상 상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요건으로 요구되는 운송경로, 세관통제 및 비조작 등의 직접운송요건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직접운송요건 확인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되,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전체 운송경로, 세관통제, 비조작 여부 등의 직접운송요건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증서류는 제3국 장기간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폐 등으로 물품 조작 위험이 큰 경우에만 한해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요구하며 제3국 단순 경유와 같이 비당사국에서 물품의 조작 위험이 없는 경우(제3국 경유 전후에 컨테이너 봉인 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한·EU FTA에서는 직접운송 예외규정으로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일 운송서류는 출발지에서 운송인이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정보를 모두 기재한 단일의 통과선하증권 등을 말한다. 세관통제 및 비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관련 서류로는 세관발행 비조작증명서, 세관발행 재수출확인증, 세관발행 보세구역 반출입확인증, 기타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제시될 수 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질문에서는 덴마크에서 수출한 물품을 일본(비당사국)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그중 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해당 사례는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할지 아니면 예외를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직접운송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면,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 범위에 해당 사례가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 비당사국 내에서의 판매

해당 사례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덴마크에서 수출된 물품이 한·EU FT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일단 한·EU FTA 목적상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면 직접운송의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물품은 일본으로 옮겨진 뒤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한국에 판매돼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한·EU FTA에서 양 당사자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EU조약 및 EU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EU 및 그 회원국(EU 당사자)을 말하기 때문에 일본은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접운송의 예외가 검토돼야 한다. 또한 제3국에서 보관과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도거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BWT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제3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그때의 수요자를 찾아 각 국가로 물품이 발송되는 형태의 거래로 전 세계적인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 소재한 회사에서 아시아 총판을 위해 싱가포르에 소재한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거래가 발생한 경우 싱가포르 보세창고에서 아시아에 소재한 각 국가로 물품을 송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EU FTA 목적상 BWT가 이뤄지는 경우 직접운송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한·EU FTA는 직접운송과 관련해 단일 탁송화물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어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뤄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가 사례를 검토해보면 한·EU FTA는 BWT에 대해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 규정하고,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BWT를 통한 한·EU FTA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산 물품을 비당사국 물류창고에 보관 후 그중 일부를 우리나라에 수입 시 독일 수출자가 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한·EU FTA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일탁송화물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이 없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어야 하며, 비당사국에서 BWT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다른 사례로 한·영 FTA 발효 후 EU산 물품이 영국의 물류창고에 보관된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BWT 거래)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영 FTA 발효 후 영국은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되며,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의 물류창고에 보관 후 그중 일부를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는 단일 탁송화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EU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두 사례는 모두 비슷한 BWT를 기반으로 한 질문인데, 그에 대한 이유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 & 답변 사례는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두 번째 질문 & 답변 사례는 단일 탁송화물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EU FTA상 직접운송의 예외가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어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뤄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3) 직접운송 관련 추가 사례 검토

직접운송에 관한 사례를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 먼저 BWT에 관한 추가 사례를 검토하면, 모든 BWT를 활용한 수출입이 한·EU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영역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판매되면 FTA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보세창고 도착 후 BWT가 이뤄지는 경우 EU의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고 협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즉, 한·EU FTA와 관련된 BWT의 적용 불가에 관한 부분은 비당사국에 소재한 보세창고를 활용한 BWT가 될 것이다.

또한 한·EU FTA가 아닌 다른 FTA의 경우 ① 비당사국을 통한 BWT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다르거나, ② 비당사국을 통한 BWT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① 비당사국을 통한 BWT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협정으로 대표적으로 한·ASEAN FTA를 들 수 있다. 한·ASEAN FTA에서는 경유국에서의 거래·소비를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당사국에서의 BWT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경유가 지리적 이유(geographical reason)와 운송 요건(transport requirement)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해 정당화돼야 하는데, 여기서 지리적 이유는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운송 요건은 수출 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했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비당사국에서의 판매가 이뤄짐을 목적으로 하는 BWT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협정은 ② 비당사국을 통한 BWT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미 FTA가 대표적이다. 한·미 FTA에서 BWT가 가능한 이유는 직접운송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BWT를 금지하는 추가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국 보세창고에 장치했다가 구매자가 나타나면 그때 계약해 수입당사국으로 운송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단순경유임을 확인해 발행한 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한·미 FTA의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3조 통과·환적에 대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EU FTA와 유사한 한·EFTA FTA 또한 BWT가 인정될 수 있는데, 한·EFTA FTA의 경우 제3국에서의 '탁송품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고, 2020년 개최된 한·EFTA 제7차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간 장거리 무역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수출입 업체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EFTA 국가로부터 최종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비당사국에서 보관된 후 일부가 분리돼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인다.

이어서 제3국에서 창고 보관이 이뤄지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돼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temporary warehousing)’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관련 사례로 수출 당시 수입국 및 구매자가 정해진 상품이 독일 출발지(Hamburg)에서 싱가포르 보세창고로 이동한 뒤 한국 부산항에 도착하는 과정 중 싱가포르 보세창고에서 한 달 이상 보관되는 경우에도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경유국에서의 보관기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은 없으나 한 달 이상 보관되는 경우에도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고 이를 관련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은 비당사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 더 많은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도 여러 입증 서류를 토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했다라도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운송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직접운송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상황에도 협정별 해석 방향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제3국에서 허용되는 작업의 범위나 직접운송의 예외를 적용할 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경유 또는 환적의 목적 등 다양한 사항을 협정문에 근거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운송에 관한 여러 사례가 존재하나 결국 각 사안 및 협정별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협정 및 법령의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지압슬리퍼의 HS Code

실내·실외용 EVA 재질의 일체형 스트랩으로 제작된 지압슬리퍼의 품목분류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이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 밖의 신발’의 ‘발목을 덮지 않는 것’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6402.99-9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하신 물품이 ‘발 운동용 물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폴(paddling pool)용품’의 ‘기타’로 봐 제9506.99-0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통관 / 해외 직구 물품 검역

해외 직구한 마른표고버섯도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되나요?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수입요건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건조 표고버섯의 경우 제0712.34-0000호에 분류가 검토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요건을 갖춰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요건을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세관장확인 요건)에 대해 해당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만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 구비 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 등은 개별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 문의해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관련기관의 답변을 토대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요건확인기관 및 연락처

「식물방역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

FTA /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협정 적용

**중국제 고무 슬리퍼(제6402.99.9000호)를 한국으로 수입한 후 제조공정 없이
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RCEP이나 한·ASEAN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해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작성·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연결 원산지증명서가 규정된 협정은 RCEP(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한·ASEAN FTA로, 해당 협정 회원국 간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은 중국→한국→태국을 거치므로, 중국이 ASEAN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한·ASEAN FTA는 적용되지 않으며,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행만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의 작성·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발급될 수 있습니다.

■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돼야 할 원산지신고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등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England, Scotland, Wales 등

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 (예) GB, UK 등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3)란은 해당서류에 발행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 가능/해당서류 발행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한·영 FTA를 적용받기 위해 이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및 직접운송 입증서류가 구비돼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원산지신고서가 구비되지 못해 사후협정 적용신청을 통해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춰 통관지세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FTA 사후협정적용(FTA 관세환급) 신청 시 구비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 원산지증명서(한·미 FTA의 경우 사본 인정)
-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사후협정적용 신청절차(관세환급)는 물품을 통관한 관세사를 통해 이뤄지므로 실무적인 절차는 해당 관세사와 다시 한 번 상의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사후협정적용을 신청했다라도 사후협정적용(관세환급) 여부 판단은 통관지세관에서 결정되는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입통관 / 구매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의 업무 범위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구매대행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 2)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해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매대행은 구매자를 대신해 물품의 구매, 대금의 지급 등을 대리해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자는 개인 구매자이며, 해당 물품은 국내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해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돼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수입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해설

권종열 |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

1. 사건 경위

가. 원고는 스웨덴에 있는 A(모회사는 B로서, 'C브랜드'의 상표권자인데, 이하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통칭해 'C그룹'이라 한다)가 자본금 100%를 투자해 2009년경 설립한 회사다.

나. 원고는 2009년경 스웨덴에 있는 특수관계사이자 C그룹의 영업본사인 D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C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물품을 수입해 원고가 직영하는 국내 매장에서 독점으로 판매했다.

다. 원고는 2013.6.3.부터 2015.7.30.까지 D에게 구매주문을 하고 C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물품을 수입하면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방글라데시 등 제3국에서 E 등의 지시·결정에 따라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7.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8.10.부터 2015.8.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다. 피고는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5.19. D가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Invoice, 이하 'PMI'라 한다)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라 한다)도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했다.

마. 피고는 2017.11.7.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〇〇〇〇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경정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했다.

바. 피고는 경정통지서 미교부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4.20.경 위 처분 중 〇〇〇〇원 부분을 직권취소했다(이하 당초처분 중 직권취소 후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고(서울행정법원 2020.9.10. 선고 2019구합55743 판결),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0누59286 판결, 이하 '원심 판결'이라 한다), 3심도 원고가 패소했다(대법원 2025.4.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¹⁾

PMI 미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D의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즉 사업지원서비스료에 해당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① 원고는 대한민국 국세청 및 스웨덴 과세관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Bilateral Advanced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라 한다)을 신청함에 있어 원고와 D 사이에는 물품 공급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상표사용과 디자인지원 및 사업지원서비스 용역거래만 있는 것으로 신고해 사전승인을 받았으므로 PMI 미지급금액은 원고와 D 사이의 물품거래 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고, 사업지원서비스료로 해석돼야 한다.

② 원고가 작성한 여러 내부 문건에 의하더라도 PMI 미지급금액은 D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로만 볼 수 있을 뿐, 물품에 대해 지급하는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③ PMI 미지급금액은 D가 원고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료를 추산해 월별로 원고에게 잠정 청구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지급하는 거래 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매월 발행한 PMI 미지급금액의 총 합산액 역시 연말 조정으로 상당 금액이 차감되므로, 실제 지급할 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2016년경 D와 사업지원서비스 용역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했는데, 이는 유통계약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통보 등 기존 유지돼 온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피고의 위법한 장기간의 재조사에 지쳐 차후 관세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약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3. 원심 판결 및 대상판결의 요지

가. 원심 판결의 요지

PMI 미지급금액은 원고가 D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물품 대가의 일부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대상판결 내용 중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다.

1)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한 계약당사자 확정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여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제3국 위탁생산자가 아니라 D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더욱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 수입에 관한 거래당사자를 D로 본다 면, D가 원고에게 매월 발행하고 청구한 PMI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 수입의 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원고는 C그룹의 국가판매조직(Country Sales Organization, 이하 ‘CSO’라 한다)의 일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하기 위해 D와 사이에 2009년경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상표권사용계약, 지원용역계약을 각 체결함에 따라 D에 대해 생산대금(제3국 위탁생산자 송장금액), 상표권이용대금(순매출액의 ○○%), 디자인비용(수입물품 가격의 ○○%)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그에 따라 원고는 D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구매주문을 하고, 제3국 위탁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송장 기재 생산대금을 비롯해 상표권 및 디자인 비용을 D에 지급해 오고 있다.

② 이 유통계약서 내지 공급계약서에, “D는 수입물품이 원고에게 인도될 때까지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그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제4.3조)” 등의 내용에 비춰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여한 계약상대방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아래 수입거래를 수행한 권리의무의 주체는 D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설명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업체의 특성에 의하더라도, D는 의류기획, 디자인, 생산,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관한 최종적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판매 당사자로서 제3국 위탁생산자와 의류품 생산위탁 계약을 맺고 원고 등 CSO와는 물품 공급계약을 별개로 체결하는 등 물품거래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될 뿐이다.

③ 제3국 위탁생산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해 인도하면서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D 등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다. 결국 제3국 위탁생산자는 이 사건 물품의 생산 및 거래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갖지 못하고 D로부터 제조·생산을 위탁받은 하청업체들로서 C그룹의 영업본사인 D의 사실상 지배를 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실질적 거래당사자로서 물품 공급계약의 주체는 원고와 D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 또한 합리적인 상인이라면, 제3국 위탁생산자가 아니라 D를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진정한 상대방으로 해 상행위를 수행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통상의 거래관념과 상관행에도 부합한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협상과 구매주문, 생산대금 및 PMI 금액의 결제 등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D와 진행했다.

2) PMI 미지급금액의 내용과 성격 및 법적 평가

가) PMI 미지급금액의 내용 분석

① 원고와 D가 체결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의하면, “D는 해당 시기에 적용되는 이전 가격 정책에 따라 원고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한다. 적용되는 가격 모델은 당사자 간 정상가격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합의됐다(제5.1조)”, “D는 인도된 상품에 대한 주문서 및 미지급금액 월별 청구서(지불요청서)를 발행한다. 해당 청구서에는 지급대상 금액 및 지불에 대한 조건이 포함된다(제5.4조)”는 취지의 가격 및 지불 약정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② D는 실제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3.부터 2015.7.30.까지의 각 거래와 관련해 원고에게 매월 PMI를 발행해 물품대금 청구를 해 왔는데, 그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월별 매출액(Sales Value), ㉡ 목표 영업이익률 산정을 위한 차감 할인율(C Discount factor), ㉢ 원고가 D에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재판매 차감금액 내지 공급가격(Resale Price minus value), ㉣ 이미 결제한 물품매입금액(Already Paid), ㉤ 미지급금액(Remains to pay)으로 이뤄져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PMI 미지급금액은 D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매월 청구하는 물품대금청구서에 기재된 구성 항목 중 ㉢ 재판매 차감 금액[=㉠-(㉠×㉡)]에서 ㉣ 결제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느냐, 이는 물품거래 대금의 잔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PMI 본문 첫머리에 ‘해당 월에 구매한 상품(Commercial goods purchased in the month of~)’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PMI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대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나) PMI 미지급금액의 법적 성격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거래에 관해 매월 발생한 D에 대한 PMI 미지급금액을 제품·상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등 원고와 D 사이의 유통계약서 내지 공급계약서 제5.4조항에 정확히 들어맞는 PMI 미지급금액은 재화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원활한 국내 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2014.8.28. 국세청에 쌍방향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원고가 수행할 D와의 대상거래를 상품유통거래, 상표권사용 허여거래, 디자인 비용 지급거래로 구분·기재했다가, 관세조사가 진행되던 2016.6.경 그 변경신청을 해 2016.10.28. 최종적으로 사업지원서비스 거래, 상표권거래 및 디자인 지원거래로 변경된 채 사전승인을 받게 됐다.

③ 원고는 제3국 위탁생산자 명의의 상업송장에 따른 생산대금을 D에 송금하면서 C그룹 내부 관계사들 사이의 재고 이동에 따른 원고의 다른 채권, 채무를 상계한 잔액을 D에 송금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2013.11.28. 한국은행에 제출한 지급방법 변경신고서에는 원고의 D에 대한 채무가 'D 재고 매입채무'라고 기재돼 있어 원고 스스로 C와의 수입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액이 용역거래가 아니라 물품공급거래에 의한 대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의 목적과 취지 및 산출방법은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각 근거 법령의 적용범위와 요건 또한 다르므로, 원고가 APA 신청 과정에서 D와의 PMI 미지급금액을 손금 내지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해서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용역비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인 2013.6.경부터 2015.7.경까지의 각 거래 이후 관세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경에 이르러서야 D와 사이에 총판지원계약(Complex Sales Support Agreement)을 체결했다.

⑥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거래가 진행되던 기간에는 원고 스스로 D와의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를 물품공급거래 내지 재화거래로 명확히 인식하고 PMI 미지급금액을 매출원가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후 PMI 미지급금액을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원고의 태도 내지 입장 변화가 어떠한 동기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피고의 관세조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회피할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 동안에 원고가 D로부터 수입물품 판매 등에 관해 여러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하나, 구체적으로 매월 어떠한 내용의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⑦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수입신고 거래기간 동안에 D의 원고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D의 용역제공 대가를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했다면, 그 전체를 수입물품 대금으로 봐야 한다.

다) PMI 미지급금액의 「관세법」적 평가

① 원고는 D와 체결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매월 D가 청구하는 PMI 미지급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PMI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의 국내 수출을 위해 D가 원고에게 판매하는 때 혹은 수입신고 당시 이미 이 사건 물품의 대가로 약정돼 있던 금액으로서 구매자

인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판매자인 D에 실제 지급해야 할 총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실제 영업이익률이 목표이익률의 예상범위를 벗어나 사후에 조정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로서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방식의 가격 조정을 유효한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조정된 금액만큼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③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PMI 미지급금액을 용역거래에 관한 사업서비스지원서비스료로 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은 결국 대부분 생산대금, 상표권 사용 및 디자인 지원 비용, 운임 등으로만 구성되고 그중 생산대금은 D가 제3국 위탁생산자에게 거의 그대로 송금할 하청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D가 취할 수 있는 금액은 상표권 사용과 디자인 비용으로만 구성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른다.

나.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와 D 사이의 유통계약 등에 따라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 관한 대금청구서 등을 발행해 청구하고, 원고는 D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의 당사자인 D가 위 유통계약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액수이고, 이 사건 미지급금액의 법적 성격이나 원고의 회계처리 방식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원고가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가의 일부로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해설

가.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제1항),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러한 「관세법」 내용과 동일하게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²⁾ 제1조에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정 부속서 III 제7항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

원고는 D가 체결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제3국 위탁생산자로부터 수입하면서 해당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했다.

Commercial goods purchased in the month of jun 20□□	
Sales value :	1,000,000 KRW
□□□ Discount factor :	0.7
Resale Price minus value :	300,000 KRW
Already paid :	200,000 KRW
Remains to pay	100,000 KRW

피고는, D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형식³⁾의 대금청구서(PMI, Planning Marketing Invoice)를 매월 발행해 대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하고, 해당 PMI에 기재된 미지급금액('이 사건 미지급금액' 또는 'PMI 미지급금액'으로 대금청구서 중 'Remains to pay'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쟁점은 위 '미지급금액(Remains to pay)'이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2) 1994.12.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5.1.1.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부속서 1가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대금청구서상 수치는 필자가 가상의 값으로 변경했다.

다.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물품의 가격이란 그 판매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조건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일반서설에서는 가능한 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상업상의 가격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을 가능한 한 수용한다는 것이다.⁴⁾

이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APP,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이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⁵⁾ 즉, 합의된 계약상 총가격은 구매자가 이를 지급하지 못했더라도 거래가격과 관세평가의 기초가 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가격이라는 것이다.⁶⁾ 이러한 점은 ‘지급하여야 할(payable)’이라는 용어에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⁷⁾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판결에서 쟁점은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고, 결국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당사자 간’에 이 사건 물품의 대금으로 ‘합의된 가격’인지 여부가 보다 구체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원심 판결에서는 먼저 이 사건 물품의 ‘거래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를 먼저 확정된 후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해당 거래당사자 간에 이 사건 물품의 대금으로 ‘합의된 가격’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 대상 판결도 이러한 원심 판결이 법리 등 오해를 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물품 수입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원고는 D가 체결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제3국 위탁생산자로부터 수입했고, 원고가 D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구매 주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생산대금도 모두 D에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물품 수입의 거래당사자는 D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나 논란은 없어 보인다.

또한 다음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지급금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D가 이 사건 물품의 대금으로 실제 지급하기로 합의 또는 약정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57면

5) 김기인, 앞의 책, 92면

6) Saul L. Sherman and Hinrich Glashoff, <GATT 관세평가규정 해설집>, 대한상공회의소, 1991., 269면

7) 김병수, <관세평가>, 세인북스, 2019., 119면

원고는 D와 체결한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에 따라 매월 D가 청구하는 이 사건 미지급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계약서 제5.4조에서는 “D는 인도된 상품에 대한 주문서 및 **미지급금액 월별 청구서(지불요청서)**를 발행한다”라고 규정해,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고, ii) 해당 계약서 문구에 따라 D가 원고에게 매월 대금청구서인 PMI를 발행하고 있으며, 그 PMI 본문의 첫머리에 ‘해당 월에 구매한 상품(Commercial goods purchased in the month of~)’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해당 PMI 구성항목 중 ‘미지급금액(Remains to pay)’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며, iii)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미지급금액을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는 등 수입물품의 대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미지급금액은 D의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즉 사업지원서비스료에 해당해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Ⅲ의 제7항에서는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condition of sale)’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란 개념이 너무 협의로 해석돼 물품에 대한 대가만을 의미하고 수입물품과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는 포장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도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하자보증비용, 외국 훈련비·교육비 등이 간접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돼 있다.⁸⁾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사업지원서비스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대로 원고가 D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D의 용역 제공 대가를 수입물품 대금에 포함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 또는 약정했으므로, 그 전체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금액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8) 김기인, 앞의 책, 106면

인조 왁스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왁스는 오랜 세월 인간의 일상과 산업을 오갔다. 고대에는 신전의 제물로, 중세에는 왕의 초로,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 광택제·화장품·윤활제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이 다양하다.

왁스는 고체이면서도 열을 받으면 부드럽게 녹고, 광택을 내면서도 보호막을 형성하는 독특한 성질 덕분에 ‘고체와 액체의 경계에 선 물질’로 불린다.

석유로부터 얻어진 왁스는 통상 제2712호에 분류한다. 제2712호는 “석유 또는 역청 유래의 파라핀 왁스,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 슬랙왁스, 오조케라이트 등”을 분류하며, 모두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성되는 탄화수소계 고체 또는 반고체 물질을 분류한다.

하지만, 화학적 변형이나 용도에 맞게 조제될 경우 다른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산화된 페트롤레이텀(석유) 100%의 흑갈색 반고상으로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가 분류되는 제3811.29-0000호로 신고했다.

먼저, 제3811호는 일반적으로 오일류(연료, 윤활유 등)에 혼합해 특정 기능을 향상시키는 **조제 품이 분류된다**.

본 물품은 방청제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첨가제이긴 하나 단일성분으로 **제3811호에 분류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제3404.90-10호에 ‘인조 왁스’를 분류한다.

제3404호에 분류되는 왁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추가해서, 그러한 물품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 (a) 부드럽게 문지르면 광택이 나며 ;
- (b) 밀도와 용해성은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
- (c) 섭씨 20°C에서
 - (i) 어떤 것은 부드럽고 반죽이 가능하며(그러나 찌든찌든하거나 액상은 아니다)(소프트왁스), 그 밖의 것은 부서지기 쉬우며(하드왁스) ;
 - (ii) 이들은 투명하지는 않으나 반투명할 수도 있으며 ;
- (d)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는 분해됨이 없이 녹으며 ;
- (e) 녹는점(melting point)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는 쉽게 실 같이 가느다랗게 뽑아지지 않으며 ;
- (f) 이들은 열과 전기의 전도성이 낮다.

또한, 제3404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 **탄화수소왁스의 부분적 산화에 의하여 얻어진 왁스**[합성이나 천연의 파라핀 왁스(paraffin wax) 같은 것]. 이들은 광택제·코팅제·윤활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본 물품은 앞서 설명한 **왁스의 특성**을 가지며 제2712호에 분류되는 탄화수소의 왁스를 화학적으로 **변성해 산화시킨 것으로** 제2712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3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제3404.90-1090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ADDITIVES FOR LUBRICATING OILS	3811.29-0000 (FEU1 0%)	Artificial waxes	3404.90-1090 (FEU1 0%)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56호_2025.11.24.

최신개정법령

최신개정법령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연구 > 지식정보 > '최신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실무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관세·무역 백과사전

-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개정 HSK에 따른 FTA·WTO 세율 및 법령 개정분 수록 (한·필리핀 FTA 신규 추가)
- ☑ 정확성 강화: FTA·WTO 일부양허품목 세율체계 재정비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 편의성 향상: 기본편 보기 요령 이미지 추가, 학명 표기 개선으로 이해도·가독성 제고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1

최신 기준 반영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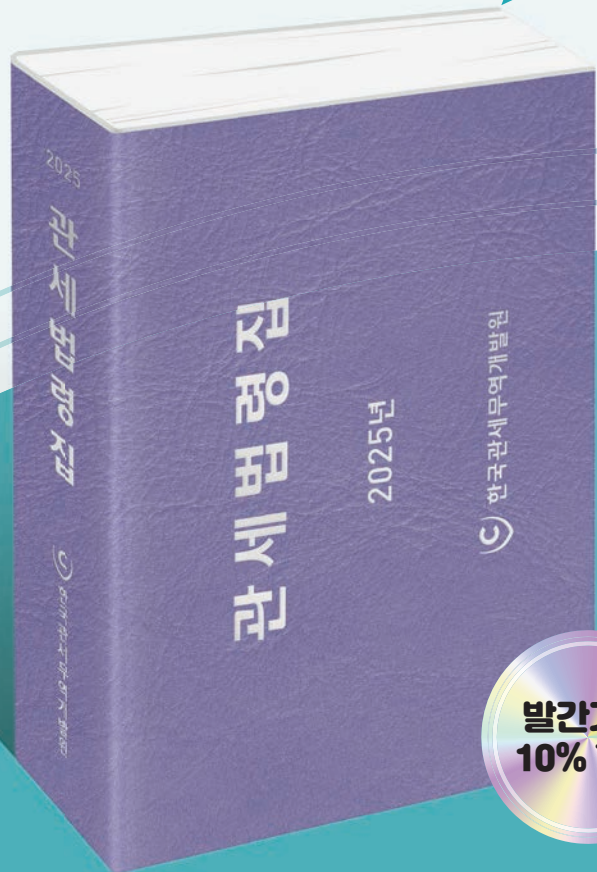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승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